

**2024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운영지침**

2023. 12.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순서

I. '24년 신증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주요 변경사항 ...	5
II. 총칙	8
1. 목적 및 근거	8
2. 용어의 정의 등	8
3. 추진체계	9
4. 운영주체별 역할	11
III.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	13
1. 보조금의 교부 신청	13
2. 보조금의 교부 결정	14
IV. 사업의 시행 등	17
1. 사업의 시행방식	17
V. 참여자	18
1. 참여자 요건 등	18
2. 참여 신청 및 참여자 선정	26
3. 참여자의 활동 분야 및 기준	27
4. 참여자의 근로조건	29



순서

VI. 참여자의 활동비 등 37

1. 보조금의 활용 37
2. 보조금 사용의 세부기준 37

VII. 보조금의 지급 등 38

1.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지급 등 38
2. 보조금의 관리 및 반납 39
3. 보조금의 정산 39
4. 부정수급 40

VIII. 평가 및 참여자 사후관리 44

1. 평가 44
2. 참여자 재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44

I 붙임

- <붙임 1>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46
- <붙임 2> 조치유형별 조치기준 49
- <붙임 3> 지방자치단체별 대표 고용노동(지)청 51
- <붙임 4> 전국 고용센터 및 중장년내일센터 현황 52
- <붙임 5>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관련 서식 58



'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분 (페이지)	현행	개정	비고
용어의 정의 등 (p.8)	"신중년"이란 만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신중년"이란 만50세 이상 <u>65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함	노인일자리 사업과 차별화
	"수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을 말함	삭제	자치단체 직접수행만 가능 변경으로 수행기관 관련 삭제
운영주체별 역할 (p.11)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 참여자 4대 보험 가입 및 관리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 참여자 관리 및 임금 등 각종 수당 지급 -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 참여자 활동종료 후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정보, 활동 지원 정보 등 안내 및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에 대해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자치단체 직접수행만 가능 변경으로 자치단체 역할 구체화
사업의 시행 등 (p.17)	<p>①사업의 시행방식</p> <p>○자치단체 직접수행은 직접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간접보조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음</p> <p>- 자치단체는 위탁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간접보조사업 등의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함</p>	<p>자치단체 직접수행</p> <p>-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 및 간접보조사업으로 수행 불가</p>	자치단체 직접수행만 가능 변경으로 사업의 시행방식 변경
	②수행기관 (이하 생략)	삭제	자치단체 직접수행만 가능 변경으로 수행기관 관련 삭제

구 분 (페이지)	현행	개정	비고
참여자 요건 등 (p.18)	①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대한민국의 미취업자. 단, 복지관, 학교, 도서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만 65세 미만**인 사람 참여 가능 * '23년 기준 1953년~1973년 출생자 해당 ** '23년 기준 1958년~1973년 출생자 해당	①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대한민국의 미취업자. * '24년 기준 1959년~1974년 출생자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과 차별화
감염병 대응 가이드 (p.35)	참여자 중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참여자를 참여 중단시키며,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감염병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참여자들을 확인하여 해당 참여자들이 소관 보건소·병원 등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함 -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완치를 확인 받기 전까지 참여를 금하여야 하며, 감염 우려가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감염병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참여자가 감염병 확진 및 밀접접촉으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판정을 받아 예정된 근무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참여자 중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u>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u>	감염병 확산 상황 대응 유연화
보조금의 활용 (p.37)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 수행기관)는 보조금을 경력형 사업 시행을 위한 다음 각호에 사용하여야 함 ① 참여자의 인건비 ② 사업 운영비 사업 운영비 사용기준 (이하 생략)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 수행기관)는 보조금을 경력형 사업 시행을 위한 <u>참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업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지출, 사무실 임차료, 집기류의 유지·보수비, 사무기기 임대료, 소모품 구입비,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로는 사용 불가</u> ① 임금 : 전문성 등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최저시급 이상)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자치단체 직접수행만 가능 변경으로 운영비 관련 삭제

구 분 (페이지)	현 행	개 정	비 고
보조금 사용의 세부기준 (p.37)	<p>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참여 목표인원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운영비로 지급함 * 회계정산 수수료가 발생 하는 경우 1인당 운영비 외에 별도 편성 가능 - 다만 자치단체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자치단체는 1인당 운영비 10만원과 별도로 지방비의 30% 상한으로 운영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음 	<p>삭제</p>	<p>자치단체 직접수행만 가능 변경으로 운영비 관련 삭제</p>
4.5 수행 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 수급 예방 노력 등 (p.42)	<p>4.5.1 자치단체의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수행기관을 지도·점검[서식 20]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월의 다음 월의 10일(7.10., 다음연도 1.1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단, 사업 시작 시점이 7월 1일 이후라면 하반기 1회만 점검 실시 가능 	<p>삭제</p>	<p>자치단체 직접수행만 가능 변경으로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삭제</p>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p.51)	<p>1. 회계법인 자격 (이하 생략)</p>	<p>삭제</p>	<p>자치단체 직접수행만 가능 변경으로 회계정산 수수료 관련 삭제</p>

1

목적 및 근거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사업”이라 함)”은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이하 생략)

2

용어의 정의 등

- “신중년”이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경력형 일자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로 일정 수준의 경력, 자격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말함
- “참여자”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을 말함
-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에 따름

- 경력형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함)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한 자치단체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호를 충족한 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함

「보조금법」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경력형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 단 서울특별시(광역시)는 30%
 - * 자치단체는 지방비 편성 시 지방부담률 이상 편성 가능

< 참조 > 신증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절차

구분	운영주체	주요내용
①보조금 교부 신청 요청 (전년도 7월 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 관할 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신청 요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자치단체)
②보조금 교부 신청 (전년도 8월 16일까지)	자치단체	· 관할 고용(지)청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한 보조금 교부신청 (자치단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③보조금 교부 결정 (전년도 9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대표 고용노동(지)청→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 가내시 통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자치단체)
④보조금 교부액 확정 (전년도 1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보조금 교부 확정내시 통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자치단체)
⑤참여 DB 구축 (매월)	자치단체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정보 입력
⑥참여자 선정 (매월)	자치단체	· 참여자 선정 및 직무 교육 실시
⑦참여자 관리, 지원금 지급 (매월)	자치단체	· 참여자 근로 후 인건비 지급
⑧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다음연도 3월 중)	자치단체	·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자치단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이하 “본부”)**
 - 경력형 사업 운영지침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 사업 진행 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대응
 - 사업 시행 결과 평가 등
- **고용노동(지)청**
 - ① 해당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이하 “관할 고용노동(지)청”)
 - 자치단체 보조금 신청 접수, 관할 자치단체의 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서식 4], 지도·점검, 자치단체 실적·정산 보고 관리, 자치단체 사업계획 변경 심사, 자치단체 부정수급 처분
 - ②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
 - * <붙임 3> 자치단체별 고용노동(지)청
 - 지역별 사업기본계획 수립, 자치단체 보조금 심사·선정, 선정 결과 본부 보고, 자치단체 예산 교부 및 정산 등에 따른 환수
- **자치단체**
 - 자치단체 수행 경력형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참여자의 관리·감독, 수행 경력형 사업의 집행 점검 등
 - 수행 경력형 사업의 개선사항 발굴
 -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그에 따른 보조금 환수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 및 확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본부의 사업평가 등 사업 운영 관련 협조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
 - 참여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 참여자 4대 보험 가입 및 관리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 참여자 관리 및 임금 등 각종 수당 지급
-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 참여자 활동종료 후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정보, 활동 지원 정보 등 안내 및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에 대해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1

보조금의 교부 신청

1.1 신청 자격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시 등(이하 “광역자치단체”라 함) 및 제2호에 따른 시·군·구(이하 “기초자치단체”라 함)

1.2 신청 기한 및 절차

-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자치단체(광역·기초)는 전년도 8월 16일까지 교부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결정 결과 선정된 사업 규모가 예산 규모보다 작아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 자치단체는 대표 고용노동(지)청별 추가 신청 기한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전년도와 사업내용 등이 같거나 중요한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된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2.1 보조금의 교부 결정

-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전년도 9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정부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을 하고, 본부는 교부결정 내용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함(가내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시 해당 자치단체에게 국회의 예산 의결에 따라 교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교부 결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① 노인일자리와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유사 사업은 수행 업무 내용 및 참여자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 결정
 - 특히, 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와 병행하는 경우 두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교부 결정
 - ② 대표 고용노동(지)청별 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2.2 우선 교부 대상인 자치단체에 우선 교부'하되, 자치단체들의 신청 규모, 지역 간 형평 등을 반영할 것
 -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부 결정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후 심의를 거쳐 교부 결정을 할 수 있음**
 - 선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에 대한 심사비 지급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관련 규정에 따름
 - ④ 자치단체의 예산 교부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최대 15일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 결정을 할 수 있음
- 본부는 국회의 예산 의결 후 이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확정 통지를 하여야 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보조금 교부 결정 결과 선정된 사업 규모가 예산 규모 보다 작은 경우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추가 교부를 진행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년도 12월 말까지 추가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업연도에 추가 교부를 진행할 경우 사업연도 3월말까지 교부 결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다만, 대표 고용노동(지)청별 배정 예산 조정을 통해 초과·부족 예산을 조정 가능한 경우 재배정 이후 교부 결정 가능

2.2 우선 교부 대상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순으로 우선 교부하여야 함
 - 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 ② 집행실적 및 취업성과 등이 우수한 자치단체

2.3 교부 결정의 취소와 변경

2.3.1 교부 결정의 취소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사업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부 결정 시 정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하여 **사업성과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보완하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음

2.3.2 교부결정의 변경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사유의 적절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운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경 결정을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교부 결정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서식 5]

〈 참조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계획 변경 내용에 따른 절차

변경 절차	변경 내용	절차 수행 주체
변경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전체 교부예산의 감액 ○ 사업 내용의 근본적 변경 ○ 목표인원 감소 ○ 참여자 요건 완화(예: 3년 이상 경력 → 1년 이상 경력) 	해당없음
변경 심사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전체 교부 예산의 증액 	대표지방관서
변경 심사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의 근본적 변경(감염병 등 천재 지변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내용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 시 예외적으로 가능) ○ 참여자 요건 완화(참여자 모집 어려움 등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관할지방관서
자치단체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내부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세부 사업 간 예산 이동 ○ 참여자 요건의 수평적 추가(예: 3년 이상 경력 → 3년 이상 경력 및 전문자격 보유자) ○ 기타 관할지방관서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변경 	
자치단체 사후 통보 (단, 통보 전 유선, 이메일 등 사전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통보로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소한 변경 	

* 변경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준용함

IV

사업의 시행 등

1

사업의 시행방식

- 자치단체 직접수행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 및 간접보조사업으로 수행 불가



1

참여자 요건 등

1.1 참여자 요건

- **자치단체는 사업 참여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참여 시켜야 함**
- 다만, 「직접일자리아업 합동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64.0% 이상 채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①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24년 기준 1959년~1974년 출생자 해당

- 다만, 결혼이민자로 F2, F5, F6 비자를 보유한 경우 참여 가능
- 여기서 미취업자란 사업 참여 당시 직접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개시일 현재 휴업상태여야 하며, 휴업상태임을 '휴업사실증명원'으로 증빙하되 휴업사실증명원이 없을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지 않거나, 사업 및 고유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여야 함([서식 8] 확인)
-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가능([서식 8] 확인)
- 자치단체는 참여자 선발 시 참여 희망자가 참여 당시 미취업 상태 등 참여자 요건 해당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의로 이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일모아시스템 조회,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

** 참여자에게 참여 중단 조치하고 재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참여 개시일 현재 참여 요건에 해당하나 참여 개시일 익일 이후 취업 및 사업장 등록증 등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참여 중단처리해야 함

② 수행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가.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 다만, 1차 공고 후에도 참여자를 모두 선발하지 못한 경우 수행 업무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참여자 선발 가능

◆ '해당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판단 기준

-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참여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의 종사 또는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 해당 업무 관련 '경력'은 직업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취미, 봉사활동, 군복무 등 직업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나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나.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1급 자격을 취득할 것

다.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등급의 자격을 보유할 것(워드프로세스 자격 제외)

- 다만 해당 경력형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등급과 동등한 수준의 지식, 기술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등록자격 및 공인자격도 인정할 수 있음

* '동등한 수준의 지식, 기술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등급 자격과 자격 응시 요건이 동등한 수준일 경우를 의미

◆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의 판단 기준

-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의미함
-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은 제외
 - 해당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운전면허 등)
 -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격(심리상담치료, 웃음치료 등)
 -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풍수지리학, 취미.오락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

라. 가에서 다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고용노동(지)청의 선정위원회가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 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는 적정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 해당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수요가 많아 참여자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 내 해당 사업의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하여 사업 운영이 어려운 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가·나·다목에 따른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의 예시

- 가·나·다목에 따른 참여자 선발이 곤란하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가·나·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채용 가능

③ 자치단체가 1.1 참여자 요건 ②항 가·나·다목에 따른 경력·자격 등을 획득하기 어려운 신산업·4차산업혁명 등의 전문분야에 신규 사업을 발굴한 경우 최소한의 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선발 가능

- 최소한의 자격이란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력 또는 나목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자격기본법 상 국가·등록 및 공인자격 보유자를 의미하며, 최소한의 경력은 관련 분야의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

◆ '가·나·다목에 따른 경력·자격 등을 획득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도시재생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에 해당하는 분야
 - 단, 경력형 일자리 취지에 맞다 보기 어려운 '공인탐정'의 경우 제외
- 융복합산업 관련 분야(예시: 6차산업혁명 자격증 보유자를 통한 농가 소득지원 컨설팅)
- 기타 신생 분야로 기존 13개 분야를 통해 지원이 어려운 전문분야

1.2 참여자 제외요건

- 자치단체 참여 개시일(예정일 포함)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자로 선정할 수 없음(그 외 사항은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참여를 허용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① 다음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참여 개시(예정)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가. 중복 참여 일자리가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참여)인 경우 : 해당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도 전일제로 분류

** '22년 기준 소득보조형으로 분류된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활사업, 숲가꾸기,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나. 중복 참여 일자리가 **시간제*** 또는 **간헐적****인 경우 : 해당 사업과 **활동시간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만 활동기간이 해당 사업과 같은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시간제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주기적인 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희망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② 참여 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여일수(주말, 공휴일, 병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포함)가 180일* 이상인 경우만 1년으로 봄

* 고용보험 취득 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른 개념임

- 직접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후순위 선발의 의미

○ 신청자의 보유 경력, 자격 등에 따른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점수를 매겨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같은 경우 2년 차 신청자를 후순위로 처리

*예시 : 3인을 선발하는 사업에 5명의 참여자 A, B, C, D, E가 신청하여 서류 및 면접 결과 종합 점수가 각각 92, 88, 83, 83, 72인 경우, C는 첫 참여자, D는 2년 차 참여자라면 D를 후순위로 두어 A, B, C를 선발

- 단, 자치단체가 참여자를 1차 공고한 이후에도 목표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차 공고부터 2항에 해당하는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③ 참여 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참여 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단, 자치단체가 참여자를 1차 공고한 이후에도 목표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차 공고부터 3항에 해당하는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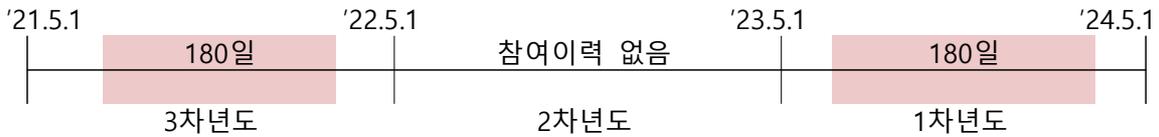
< 참조 > 산정기준 예시[참여개시(예정)일이 '24.5.1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에 따라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①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업의 종료일이 참여개시일('24.5.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참여개시일 직전 2년간 각 년도 모두 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 ②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업의 종료일이 참여개시일('23.5.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참여개시일 직전 3년 중 2개 년도(1차, 3차)가 각 년도 모두 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① 참여개시일('23.5.1)로부터 역산하여 1년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이 없고,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반복참여 제한에 해당)
-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반복참여 제한에 해당)



- ② 참여개시일 직전 3년간 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없거나 180일 미만인 연도가 2개 연도 이상인 경우



- ④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고 경력형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다만 수급 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참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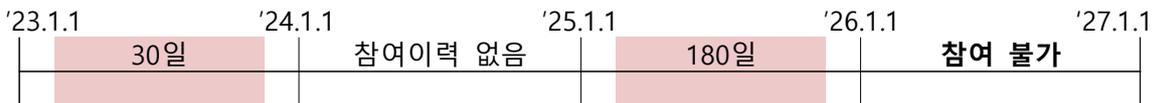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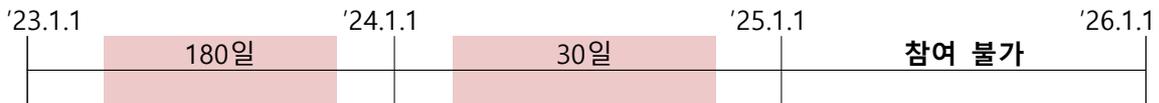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참여 제한의 예시

- ① 예시 1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종료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참여 불가
- ② 예시 2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참여 가능
- ③ 예시 3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참여 가능

- ⑤ 참여자의 경력, 자격 등이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적절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
- ⑦ '23년 이후 경력형 사업에 2년 참여한 사람
 - 이 경우 연간 참여일수 및 참여횟수와 무관하게 참여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1년으로 봄
 - 단,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중단하거나, 중도탈락하는 경우에는 재참여 기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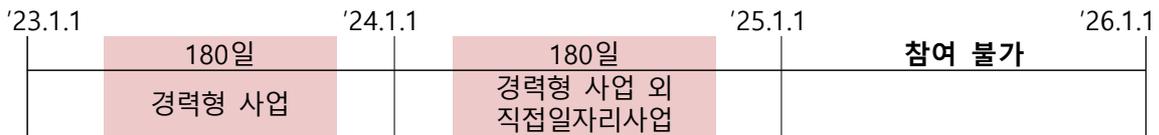
< 참조 > 생애 중 최대 2년 관련 예시

- ① '23년 이후 경력형 사업에 2년을 참여하였고, 다음 연도에 경력형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참여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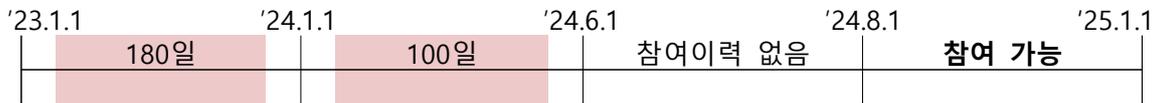
- ② '23년 이후 경력형 사업에 1년, 경력형 사업 외 직접일자리사업에 1년을 참여하였고, 다음 연도에 경력형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참여 불가(생애 중 2년 참여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직접일자리 합동지침에 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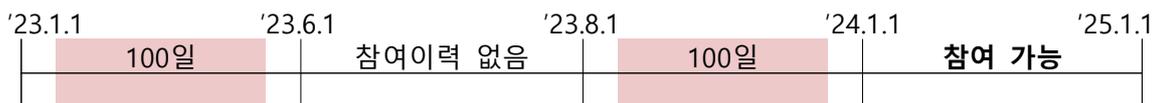
- ③ '23년에 참여하였고, '24년 상반기에 참여 후 같은 해 하반기 재참여하려는 경우

→ 참여 가능



- ④ '23년 이후 같은 연도에 경력형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경우

→ 참여 가능



- ⑧ '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 연계 대상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경력형 일자리에 재참여하려는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 연계 대상 사업(이하 '국취 연계 사업')

- ① 신중년사회공헌활동(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②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 ③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 ④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⑤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 ⑥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⑦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 ⑧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 ⑨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 ⑩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 ⑪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 ⑫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문화유산산업인턴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선발 예시

- ① 예시 1 : '23년도 국취 연계 사업 참여 종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 또는 중도탈락 → '24년도 경력형 사업에 참여신청 → 참여 불가
- ② 예시 2 : '23년도 국취 연계 사업 참여 종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종료 → '24년도 경력형 사업에 참여신청 → 참여 가능

- 최근 3년 중 2년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제한기간 1년이 종료된 후 참여 가능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하되, 후순위자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순위보다 우선 선발*

* 참여이력이 없는 취약계층만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직접일자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자를 우선 선발

- 국취 연계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 또는 중도탈락하고 경력형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를 제한

- 단, 자치단체가 참여자를 1차 공고한 이후에도 목표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차 공고부터 8항에 해당하는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참여자 선발 순위: ① 경력형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 → ② 2년 전 경력형 사업에 참여 후 1년 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 → ③ 직전 연도에 경력형 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 또는 중도탈락자

1.3 참여자 제외요건의 확인 및 조치

- 자치단체는 참여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일모아시스템'에 참여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국취 연계 사업의 참여자 여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참여 여부, 중복·반복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 가능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체크리스트[서식 7]를 활용하여 참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 신청자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반복참여자가 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 참여자의 반복 참여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하여야 함
 - 중복참여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참여자에게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의사 파악 후,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중단 조치
 - 일모아시스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정상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자로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성실참여 확인서[서식 20]를 제출받아 확인

2.1 참여 신청

- 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자의 신청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관할 내 세부사업을 통합 공고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시·군·구 사업의 공모 및 홍보를 시·도에서 총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참여 신청자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6]와 전문경력 기술서 [서식 9]를 제출 받아야 함
 -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령·보관 등을 철저히 안내하고, 연계된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참여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며, 오프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별도의 동의서 추가 수령이 필요
- 자치단체는 참여자를 직접 모집·선발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수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참여자로부터 신청분야의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입증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음
 - * 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 참여 신청은 접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모집인원에 따라 접수 및 선발함
 - 참여 희망자는 하나의 공고 내에서 선호 순위를 정하여 세부사업별로 중복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1개의 사업만 참여시켜야 함
- 모집공고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중년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시행하여야 함
 - * 워크넷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페이지의 적극 활용을 권고
 - 자치단체는 인근 고용센터 및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참여자에 대한 상담·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참여자 신청 마감일 10일 전까지는 모집공고 내용이 게시되어야 하며, 접수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함
 - 단, 결원 및 모집미달 시 재공고 기간은 5일 이상, 접수기간은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2.2 참여자 선정

- 자치단체는 신청 마감일 후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비대상자에게는 대기 순번을 부여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참여자에게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 중단 조치,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3

참여자의 활동 분야 및 기준

3.1 참여자의 활동분야

- 자치단체는 참여자에게 다음 표에 정한 13개 분야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참여자 선정 시 전년도 기준으로 참여자 비중이 낮은 분야로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기타 분야를 활용하여 기존 분야 이외의 4차산업·신직업 분야 등 새로운 활동 분야를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 >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경영전략		706. 기타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200)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0)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03. 유통전략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렌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법률법무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1. 공연 및 전시활동
	209. 기타 마케팅 홍보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인사 노무 (300)	301. 기업문화	(900)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문화예술
	305. 노사관리	행정 지원 (010)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인사노무		014. 기타 행정지원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재무회계금융		026. 기타 교육연구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외국어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기타 (040)
	602. 의료보건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사회서비스	044. 기타	

3.2 '경력형 사업'의 일자리 기준

- 자치단체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일자리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일 것
 - ②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
 - ③ 노인일자리와 중복되는 일자리가 아닐 것
- 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참여자를 참여시킬 수 없음**
 - ①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 ② 상당한 경력 및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 일자리
 - * 주차장관리, 환경미화

- ③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을 위한 일자리
 - * 행정기관 등의 최소한 운영을 위해 필수로 채용하여야 하는 행정요원, 시설관리인력 등
- ④ **박람회·축제** 등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을 위한 일자리. 단, 행사기획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3개월 이상 채용되는 경우는 참여 가능
- ⑤ 특정 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와 같은 사업 관련 일자리**
 - *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 ⑥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무관하게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 ⑦ 자치단체 전반적인 운영 및 경력형 사업 운영을 위한 일자리
 - * 자치단체 재무·회계 등 관리 업무, 경력형 사업 운영 담당 업무 등
- ⑧ 선정 사업과 유사·중복적인 다른 정부부처의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경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음
 1. 다른 부처의 사업만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의 참여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동일하지 않아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부처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기간, 서비스 제공대상 등을 고려하여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참여자의 근로조건

4.1 '경력형 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

4.1.1 참여자의 법적 지위

- 경력형 사업의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임
 - 자치단체는 참여자의 근로 개시일 전까지 [서식 10] 또는 [서식 11]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4.1.2 임금

- 자치단체는 참여자의 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함
(최저임금 : '24년 시급 9,860원)

-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다음 달 5일 이내), 지급일이 휴일이면 가급적 전일에 지급함
 - 참여자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격주 단위로 지급할 수도 있음
 -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참여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 자치단체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에는 ①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임금지급일, ③근로일수, ④임금총액, ⑤총 근로시간 수, ⑥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⑦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⑧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포함되어야 함

4.1.3 근무시간

- 자치단체가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단, 8시간 이내 근무) 등을 정하되, 22:00이 후 야간근무는 할 수 없음

4.1.4 유급 주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참여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함
 - * 유급 주휴일은 사업개시일부터 1주 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월 단위로 계산
 - * 3월1일(국경일)에 근무하지 않으나 사업기간을 3.1~6.30까지 공고 후 2월25일에 선발확정한 점을 감안 3월2일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3월 31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연차휴가 지급
 -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 만 1월로 계산(2.15~3.14)하여 연차휴가 지급
- 사업 시행을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는 유급 주휴일 수당을 미지급함

유급 주휴일 수당 계산방법

-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30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 59,160원 = (9,860원 × 7.5시간 × 4일) ÷ 5일
 - * 1일 7.5시간 근로일수(4일) ÷ 주 통상근로 일수(5일)
- (또는)
-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15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 29,580원 = (9,860원 × 3시간 × 5일) ÷ 5일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② 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③ 위 ①②의 공휴일이 토·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일요일, 임시공휴일 제외)과 겹칠 경우

④ 위 ①②③의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1일 추가 부여

⑤ 이상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별도 대체공휴일 부여

- 참여자 중 근로계약서상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음

*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 자치단체는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함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토록 권장하고, 계약종료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과 별도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만큼의 수당을 지급함

*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의 경우 주휴일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사업 참여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병가의 경우 지급할 수 있다.

- 1주와 1월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주를 말함(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 근무는 평일 근무로 간주)

* 예시, 화요일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만1주는 화요일~다음주 월요일을 의미

- 1월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

* 3월1일(국경일)에 근무하지 않으나 사업기간을 3.1~6.30까지 공고 후 2월25일에 선발 확정된 점을 감안 3월2일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3월31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연차휴가 지급

- 근로계약을 2차로 나누어 할 경우 1차 계약기간동안 근로한 후 발생한 잔여기간을 2차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연차 유급휴가 계산

< 연차 유급휴가 계산(예시) >

구 분	기 간		
	1차 계약	작업 중단	2차 계약
근무계약기간	'18.3.1~5.22	5.23~6.6	6.7~7.15
연차 유급휴가 계산	3.1~3.31→1월 4.1~4.30→1월 5.1~5.22→22일	연차 유급휴가 미계산	5.1~5.22(22일)+6.7~6.15(9일)→1월 6.15~7.15(31일)→1월

4.1.5 근로계약서의 작성

- 자치단체는 사업투입 전에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일당 및 시간급 등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포함), 소정근로시간(사업·종업의 시각 포함,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포함), 휴일, 연차휴가, 근로계약기간, 휴게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한편, 사업이 일정 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와 합의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중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여야 함

4.1.6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 자치단체는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사업장별 근무자 명부[서식 13]를 작성·비치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참여자가 경력형 사업에 참여 중, 30일 이상 참여 후 사업 참여를 포기 또는 사업이 종료된 후 근무경력 확인을 요구할 경우,
 - 자치단체는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무확인서”를 발급함[서식 14]
 - *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요구한 서식이 있을 경우는 그 서식으로 대체 가능

4.1.7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4대 보험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건강보험 :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
 - *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가입
 - ** 주 15시간 미만은 계속해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 시간 제외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기한 준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신고내용 및 기한

- 피보험자격 신고(고용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 상용근로자 : 근로자 채용 또는 퇴직 등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취득 또는 상실 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 :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4.1.8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별 근무기간(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해당 세무서에 신고·납부
 - * 제출시기 : 다음달 10일까지
 - * 소득세 : 비과세금액(간식비)를 제외한 월급여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산정
 - * 주민세 : 소득세의 10%(원단위 버림)
 - 3개월 미만 사업의 경우,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2. 참여자의 활동기간

-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정함

4.3 참여자 임금 지급 방법

- 임금은 참여자가 지정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참여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관련 서류 보관)
 - * 참여자는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판결, 공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서식 12]

4.4 휴업수당

-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참여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휴업수당 지급 방법은 '4.3 참여자 임금 지급방법'에 따름

4.5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단계에 따라 참여자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
- (사전준비 단계)
 - * 미세먼지 예보기준 '나쁨' 단계부터 적용
(PM10 81 $\mu\text{g}/\text{m}^3$ 이상 또는 PM2.5 36 $\mu\text{g}/\text{m}^3$ 이상)

- (민감군 확인) 옥외 작업자 중 폐질환(천식 등)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이하 '민감군'이라 함)을 미리 파악
 - * 건강진단 결과나 건강상담 자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감군을 확인
- (연락망 구축) 사전에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 기준 및 건강이상자 긴급보고 등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
- (교육 및 훈련)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 개인위생 관리, 방진마스크 착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훈련 실시

● (미세먼지 주의보)

- * 미세먼지 예보기준 '매우나쁨'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부터 적용 (PM2.5 75 $\mu\text{g}/\text{m}^3$ 이상 또는 PM10 15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 (미세먼지 정보 제공)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발령사실과 아래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정보 제공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 작업자에게 가급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지도
 - * 안전보건공단 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사전에 가급적 준비
 - * 마스크 착용 시 현저한 호흡 불편을 느끼는 경우 방진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도록 권고
- (민감군에 대한 추가조치) 민감군은 최대한 옥외 작업에서 제외

● (미세먼지 경보)

- *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경우부터 적용 (PM2.5 150 $\mu\text{g}/\text{m}^3$ 이상 또는 PM10 3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 (미세먼지 정보 제공)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발령사실과 아래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정보 제공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 작업자에게 가급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지도
- (일정조정 및 휴식) 옥외 활동을 하는 경우 가능한 다른 날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조치
 - * 휴식시간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공간에서 깨끗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물 양치질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민감군에 대한 추가조치) 민감군은 최대한 옥외 작업에서 제외

4.6 감염병 대응 가이드

-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이하, “감염병 상황”이라 한다)이 우려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시행 시점을 연기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사업 연기·중단·방역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감염병 상황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아래 감염병 전파 방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① 호흡기 관련 감염병 상황 시 마스크 착용
 - ② 활동장소에 손소독제 비치
 - ③ 실내활동 시 한 시간마다 환기 실시
 - ④ 외부활동 후 손 씻기 철저
 - ⑤ 감염병 유행 국가 방문자*·감염병 유증상자의 경우 활동 참여 배제
 - * 감염병 유행 국가 방문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 유행 중인 감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하여 참여배제 기간 설정
 - ⑥ 기타 감염병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안내되는 감염방지 조치
- 자치단체는 감염병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계획서 상 근무내용과 관련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자치단체는 참여자에게 근무일지·근무 증빙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제 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 참여자가 재택근무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부정수급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
- 참여자 중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감염병 확진자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참여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지한 자치단체는 즉시 소관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 담당자에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 확진자 및 감염우려가 있는 참여자 수, 참여배제 등 조치사항, 활동기관 내 추가 전파 우려 등
 - 또한,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검사 결과 등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소관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에 공유하여야 함
- 소관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4.7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가이드

- 참여자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는 즉각 해당 참여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또한, [서식 15]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보고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관할고용노동(지)청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 필요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은 보고서를 보완할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자치단체 및 관할고용노동(지)청은 사고내용, 조치상황,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 마련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활동에 대해 중단 조치할 수 있으며, 예방조치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될 때 활동을 재개시킬 수 있음
- 본부는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각 운영 주체로부터 요청할 수 있음
- 참여 자치단체는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조치를 해야함

VI

참여자의 활동비 등

1

보조금의 활용

-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경력형 사업 시행을 위한 참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업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지출, 사무실 임차료, 집기류의 유지·보수비, 사무기기 임대료, 소모품 구입비,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로는 사용 불가
- ① 임금 : 전문성 등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최저시급 이상)
-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2

보조금 사용의 세부기준

- 인건비
 - 자치단체 세부사업별 특성(요구 경력 수준 등)에 따라 최저임금('24년 시급 9,860원) 이상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함
 - 관련법령에 의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함

VII

보조금의 지급 등

1

보조금 등의 교부 신청·지급 등

-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자치단체(광역·기초)는 **전년도 8월 16일까지** 교부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결정 결과 선정된 사업 규모가 예산 규모보다 작아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 자치단체는 대표 고용노동(지)청별 추가 신청 기한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전년도와 사업내용 등이 같거나 중요한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된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전년도 9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정부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을 하고, 본부는 교부결정 내용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함(가내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시 해당 자치단체에게 국회의 예산 의결에 따라 교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본부는 국회의 예산 의결 후 이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확정 통지를 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일정은 당해 연도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잔금 지급 시 기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보조금 규모를 조정할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24년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은 '24년 중의 활동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2.1 보조금의 관리

-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예산운용계획서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지출내역은 정산 시 불인정하고 그 비용은 국고로 환수 조치함

2.2 보조금 반납의무

- 불인정 금액
 - 이 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경우 보조금을 불인정함
 - 부정수급이 아닌 중복과오급금 등 발생 시 전액 환수조치하여야 함
-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조치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자치단체는 집행 잔액을 납부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분 반납조치
 -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면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처리

3.1 정산 시기

- 매 회계연도 말(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 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 정산을 실시함

3.2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정산) 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정산하고 고용노동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정산보고서[서식 16]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7]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름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필요 시 실적(정산) 보고서 관련 증빙자료(통장, 지출품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한 후 파기할 수 있음

4

부정수급

4.1 부정수급의 정의

- “부정수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내 반환규정 >

※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2 부정수급의 판단기준

-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경력형 사업의 목적 및 운영에 어긋나는 용도에 지출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 규정,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 또는 교부받은 경우
 - 경력형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임원 및 근로자를 참여자로 참여시킨 경우
 - 실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자로 등재하거나, 사업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
 -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려고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함
 - * 근로자가 신분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하거나 타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4.3 부정수급 등의 제재

-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해야 하며,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형사고발
 - 고의·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다면 고발하여야 하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고의·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제재를 받은 참여자 등에 대해 경력형 사업의 참여를 5년간 제한하여야 함
 - 다만 5년이 경과하더라도 형사고발에 따른 소송 등이 종료되지 않거나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종료되거나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참여를 제한함
- 자치단체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반드시 참여자 등에 안내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4.4 반환금의 환수

- 자치단체는 반환금을 반납하여야 할 기관 또는 사람에게 반환결정 통지 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주어야 하며,
 -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반환결정 통지(반환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절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다만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함. 이 경우 형사고발은 부정행위 유형, 부정수급액, 반납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 참여자의 재정상황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6월 범위 내에서 분납 가능

4.5 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예방 노력 등

4.5.1 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노동(지)청의 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등에 대해 사업연도 내 1회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점검대상 및 점검 방법은 별도로 정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하여야 함

4.5.2 사전고지 등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도·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참여자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함
 - 다만,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자 또는 기관이 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참여자와 기관이 공모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하여 제한할 수 있음

4.5.3 지도·점검 결과 지침 위반 등에 대한 제재

-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참여자 등이 지침 및 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붙임 2]에 따라 시정조치, 주의, 경고, 수행배제,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VIII

평가 및 참여자 사후관리

1

평가

1.1 사업의 평가

- 고용노동부는 사업추진 실태분석,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위해 사업평가를 할 수 있음
- 사업평가는 정량평가(집행 실적 등) 및 정성평가(참여자 만족도 등)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함

1.2 자치단체의 협조

- 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사업평가를 위해 요청을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개선 권고 또는 우수사례 확대 적용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2

참여자 재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2.1 참여자의 경력관리

- 자치단체는 참여자의 활동시간, 활동기관 등 실적을 관리하여 참여자의 확인 요청 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실적확인서[서식 18]를 발급하여야 한다.

2.2 참여자의 사후관리

2.2.1 참여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 자치단체는 사업참여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참여자로 하여금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참여자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무료)할 수 있음

❖ (인정 대상) 「중장년내일센터」(붙임 5)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6시간 기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입주한 중장년내일센터가 고용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4시간 기준), e-중장년(온라인강의)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4시간, 12강 기준)

- 참여자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 등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 '23년 사업에 참여 후 생애경력설계를 받고 직업훈련(생략 가능) 및 취업알선 등을 받았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24년 사업에 재참여 가능

* 자치단체는 '24년 사업 시행시에는 동 서비스 참여 여부를 확인 후 참여시켜야 함

● 자치단체는 참여자에게 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정보 안내*와 함께 공공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하도록 안내해야 함

- 또한, 참여자가 민간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취업지원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중년 대상 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해야 함

* 단,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참여 제한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야함

◆ **실업급여: 문의- 고용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참여자가 경력형 일자리를 포함하여 직접일자리에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도록 안내

- 사업종료 이전에 맞춰 취업알선·채용박람회 등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함

2.2.2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자치단체는 본 사업 참여 종료 후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정보 등을 안내하여야 함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취업취약계층 중 ①~③ 및 ④ 유형의 일부 정보는 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 신청자 정보를 미입력하였거나, ⑤~⑪ 유형의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

① 저소득층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연금 수급내역 등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시)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209,56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4,571,021	5,108,996	5,646,971	6,184,946	6,722,921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③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④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⑨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분	첨부서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⑪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조치유형별 조치기준

1. 공통

● 자치단체, 참여자가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① 단순 착오에 따른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가능
- ② 위반행위로 인한 수행배제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 단, 고의·거짓 등의 방법으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수행배제 시 5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관련 형사고발 후 소송 및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사업 참여 제한

2. 조치유형별 조치기준

조치유형	판단기준	지적위반 사항(예시)
시정조치	○ 시정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또는 회복이 가능한 경우	- 관련 서류 보존 소홀 등(정리 미숙) - 일모아시스템 실적 미입력 및 착오입력
주의	○ 경미한 운영사항 위반 및 경과실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주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한 경우	- 참여자 관련 서류, 예산 지출 서류 등 미비 - 사업계획 일정 위반 또는 변경 절차 미준수 (통보·승인 없이 자체 변경 후 사업 수행 등) - 경미한 사유의 예산운용계획 위반 - 적절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경고	○ 중대한 운영사항 위반 및 경과실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단순 주의 조치로는 개선이 어려운 경우	- 중대한 예산운용계획 위반 (사업 목적 및 용도에 맞지 않은 지출 등) - 예산집행관련 법령 미준수 - 참여자 선발 관련 지침 미준수 (반복참여자, 취업자 등 요건 미준수자 선발, 적합한 절차 없는 채용 등) -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 주의 지적사항을 2회 이상 연속 지적받은 경우
수행배제	○ 중대한 위반사항에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고의·거짓 등의 방법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동일한 경고 지적사항을 2회 이상 연속 지적받은 경우 - 고의·거짓 등의 방법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적발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자치단체)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참여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자치단체별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청	자치단체
서울청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서울 중구·서울 중랑구
중부청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경기지청	경기도, 경기 부천시·김포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고양시·파주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이천시·하남시·안양시·군포시·과천시·광명시·의왕시·안산시·시흥시·평택시·안성시·오산시·가평군
강원지청	강원도, 강원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강릉시·동해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원주시·횡성군·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철원군
부산청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사하구·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북구·사상구·강서구
창원지청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함안군·의령군·창녕군·양산시·김해시·밀양시·진주시·사천시·거창군·남해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통영시·거제시·고성군
울산지청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북구·중구·동구·울주군
대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중구·수성구·북구·동구·남구·서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군위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구미시·김천시·영주시·문경시·상주시·봉화군·안동시·영양군·예천군·의성군·청송군
광주청	광주광역시, 제주도, 광주 광산구·남구·북구·동구·서구
전주지청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남원시·정읍시·무주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익산시·김제시·군산시·고창군·부안군
목포지청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강진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무안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나주시·곡성군·구례군·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여수시·광양시·순천시·보성군·고흥군
대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충남 금산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보령시·서산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태안군·홍성군
청주지청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괴산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증평군·진천군·충주시·제천시·단양군·음성군

전국 고용센터 및 증장년내일센터 현황

전국 고용센터 현황

고용센터명	관할 지역	주 소
서울고용복지+센터	중구·종로구·동대문구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서초고용센터	서초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강남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송파구·강동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성동구·광진구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76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영등포구·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강서구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서울북부고용센터	중랑구·노원구·도봉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강북구·성북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36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인천고용복지+센터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로 131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부평구·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서구·강화군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강화고용복지센터	강화군	인천 강화읍 강화대로 395
부천고용복지+센터	부천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김포고용복지+센터	김포시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의정부고용복지+센터	의정부시·포천시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포천고용복지센터	포천시	경기 포천시 중앙로62
구리고용복지+센터	구리시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남양주고용복지+센터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동두천고용복지+센터	동두천시·연천군, 철원군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양주고용복지+센터	양주시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고양고용복지+센터	고양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파주고용복지+센터	파주시	경기 파주 중앙로 328
수원고용복지+센터	수원시, 화성시 동탄 1~6동·병점 1~2동·진안동·반월동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용인고용복지+센터	용인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화성고용복지+센터	화성시(수원고용센터의 관할지역 제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85
성남고용복지+센터	성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시·양평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양평고용복지센터	양평군	경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11

고용센터명	관할 지역	주 소
이천고용복지+센터	이천시·여주시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여주고용복지센터	여주시	경기 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
하남고용복지+센터	하남시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안양고용복지+센터	안양시·군포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군포고용복지센터	군포시	경기 군포시 군포로 522
광명고용복지+센터	광명시	경기 광명시 시청로 15
의왕고용복지+센터	의왕시·과천시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안산고용복지+센터	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시흥고용복지+센터	시흥시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
평택고용복지+센터	평택시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안성고용복지+센터	안성시	경기 안성시 장기로 131
오산고용복지+센터	오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동로 51
춘천고용복지+센터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가평고용복지센터	가평군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
홍천고용복지센터	홍천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56
강릉고용복지+센터	강릉시·동해시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
동해고용복지센터	동해시	강원 동해시 동해대로 4921
속초고용복지+센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원주고용복지+센터	원주시·횡성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태백고용복지+센터	태백시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삼척고용복지+센터	삼척시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영월고용복지+센터	영월군·정선군·평창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부산고용복지+센터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 ·부산진구·연제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사하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0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창원고용복지+센터	창원시(의창구·성산구·진해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마산고용복지+센터	창원시(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함안군·의령군·창녕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함안고용복지센터	함안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경길 32
창녕고용복지센터	창녕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8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화합로 106
김해고용복지+센터	김해시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양산고용복지+센터	밀양시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밀양고용복지+센터	양산시	경남 밀양시 백민로 69
진주고용복지+센터	진주시·사천시·산청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사천고용복지센터	사천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9-1

고용센터명	관할 지역	주 소
하동고용복지+센터	하동군·남해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거창고용복지+센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 거창읍 송정8길6
통영고용복지+센터	통영시·고성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고성고용복지센터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75
거제고용복지+센터	거제시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6
대구고용복지+센터	중구·수성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북구,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동구	대구 동구 아양로 22
경산고용복지+센터	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 경산시 중앙로85 3,4층
영천고용복지센터	영천시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남구·서구·달서구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칠곡고용복지+센터	칠곡군(석적읍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성주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포항고용복지+센터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울진출장센터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7길 10
경주고용복지+센터	경주시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구미고용복지+센터	구미시·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김천고용복지+센터	김천시	경북 김천시 신양2길 46
영주고용복지+센터	영주시·봉화군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문경고용복지+센터	문경시·상주시	경북 문경시 매봉1길 67
상주고용복지센터	상주시	경북 상주시 왕산로155
안동고용복지+센터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의성고용복지센터	의성군	경북 의성읍 문소3길 102-1
예천고용복지센터	예천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26
광주고용복지+센터	동구·서구·남구·북구,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광주 북구 금남로 121
나주고용복지센터	나주시	전남 나주시 우정로 56
화순고용복지센터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산구, 영광군·함평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영광고용복지센터	영광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
전주고용복지+센터	전주시·무주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남원고용복지+센터	남원시·순창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정읍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익산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김제고용복지+센터	김제시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부안고용복지+센터	부안군·고창군	전북 부안읍 번영로 145

고용센터명	관할 지역	주 소
고창고용복지센터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30
목포고용복지+센터	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 ·영암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무안고용복지센터	무안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61
영암고용복지센터	영암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125외3필지
해남고용복지+센터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순천고용복지+센터	순천시·보성군·고흥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여수고용복지+센터	여수시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광양고용복지+센터	광양시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광역시, 금산군	대전 서구 문정로132번길 56
금산고용복지센터	금산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70
공주고용복지+센터	공주시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세종고용복지+센터	논산시·계룡시	세종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논산고용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청주고용복지+센터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 ·보은군·충평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진천고용복지센터	진천군	충북 진천군 덕산읍 자안로9
옥천고용복지+센터	옥천군·영동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길4
천안고용복지+센터	천안시·당진시·예산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당진고용복지센터	당진시	충남 당진시 시청2로 12
예산고용복지센터	예산군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0
아산고용복지+센터	아산시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충주고용복지+센터	충주시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
제천고용복지+센터	제천시·단양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음성고용복지+센터	음성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13
보령고용복지+센터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 ·청양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부여고용복지센터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6
서천고용복지센터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109번길25
홍성고용복지센터	청양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7
서산고용복지+센터	서산시·태안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태안고용복지센터	태안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36
제주고용복지+센터	제주도	제주 제주시 중앙로165

전국 중장년내일센터 현황(노사발전재단 운영)

중장년내일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 385, 3~4층 (준타워)	02-6350-1500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층 (BYC하이시티빌딩)	02-3488-1900
인천중장년내일센터	인천 남동구 미래로 7, 3층 (현대해상빌딩)	032-421-8301
경기중장년내일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3층 (권선동, 안동빌딩)	031-8014-8500
강원중장년내일센터	강원 원주시 남원로 528, 2층 (단구동, KT링커스빌딩)	033-735-0971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4, 11층 (흥국생명빌딩)	051-860-1300
울산중장년내일센터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4, 2층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052-289-8975
대구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7층 (동인동2가, 호수빌딩)	053-550-3000
광주중장년내일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36, 4층 (누문동, 교보빌딩)	062-531-5712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61, 5층 (효자동2가, BYC빌딩)	063-222-1840
충청중장년내일센터	대전 서구 둔산중로 8, 15층 (탄방동, 교원공제회관)	042-489-3820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3층(이도1동, 제주고용센터)	064-722-4060

전국 중장년내일센터 현황(민간단체 운영)

중장년내일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3층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04-7340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2호 (상암동)	02-3153-796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49, 2층(가능동,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37-2719
고양상공회의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A동 4층 (장항동, 라페스타)	031-901-9197
파주상공회의소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8층 (금촌동,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071-4245
안산상공회의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0, 안산상공회의소 A동 3층(고잔동)	031-410-3031
평택상공회의소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2층 (이충동,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646-1046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12층 (양정동, 양정타임스퀘어)	051-647-0453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 남구 대학로 60, 3층 (무거동)	052-277-9491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28번길 6, 센트랄빌딩 5층	055-266-8317
한국커리어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1길 6-1, 보배빌딩 2층	055-632-2254
경북경영자총협회경북동부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1(상도동), 대운개발빌딩 3층	054-727-2020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 구미시 백산로118, 3층(송정동,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4-461-5519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 북구 금남로 121, 1층 (북동,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2-609-8964
목포상공회의소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2층 (상동,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280-0556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 순천시 우석로 7, 2층 (덕월동,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061-741-0096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6층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042-253-7051
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6번길 76, 직지스마트타워 908호	043-270-7500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5층	041-559-5766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관련 서식

[서식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59
[서식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계획(총괄)	60
[서식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별 계획서	61
[서식 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검토 보고서	62
[서식 5]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64
[서식 6]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6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67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6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9
[서식 7]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체크리스트[참여자, 자치단체]	70
[서식 8]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74
[서식 9]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전문경력 기술서	75
[서식 10] 표준근로계약서	76
[서식 11]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77
[서식 12] 임금 현금수령 신청서	78
[서식 1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근무자 명부	80
[서식 14] 근무확인서	81
[서식 15] 안전사고 발생 현황 보고서	82
[서식 16]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정산보고서	83
[서식 17]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실적보고서	84
[서식 18]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실적확인서	85
[서식 19]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	86
[서식 20] 국민취업지원제도 성실참여 확인서	87
[서식 21]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 신청서	88

<서식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별 계획서						
연번		자치단체명		사업부서		
1. 사업부서 현황						
①담당자		②연락처 (이메일)	()	③팩스		
④사업수행 부서 인력현황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사업책임자						
담당자						
2. 사업 개요						
⑤사업명						
⑥사업기간	~					
⑦사업내용 요약						
⑧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⑨참여인원	명					
⑩임금	시급 원 / 월급 원					
⑪활동시간	주 시간 / 월 시간					
⑫예산운용계획	총액	원	국고보조금	원	자치단체 부담금	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천원)		산출내역		비고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인건비	소계					
자치단체 부담						
인건비	소계					
기타						
3. 사업계획 세부내용 : 별도 첨부						

〈작성요령〉

연번 : 서식 2의 '경력형 일자리 수행계획 개요'의 연번을 앞에 기재

3. 사업계획 세부내용:

1. 사업목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기재
3. 사업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
4. 기대효과
5. 기타 참고사항

'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검토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자치단체명		<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명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사업기간 (계속 여부)	'00.00월~00월(00개월) ('00년~계속/신규)

㉠ 신청요건	신청내용	구비서류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국비 신청액	000,000천원	예산운용계획	적합/부적합/보완 * 부적합사유 기재
<input type="checkbox"/> 대응투자 (자치단체)	000,000천원 (총 사업비의 %)	예산운용계획	적합/부적합/보완 * 부적합사유 기재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역: 00시 ○ 목표인원: 명 ○ 사업분야: 13개 분야 기재 ○ 사업내용: 	사업제안서 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등	적합/부적합/보완 * 부적합사유 기재

㉡ 검토사항	검토의견
--------	------

㉡-1. 사업의 적정성(60점)	
○사업내용의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사업내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이 지역 사회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 ○(사업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복지관, 학교,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독거노인 가정 등 수요처 및 주요활동장소 기재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 기대효과 기술 ○(타 사업과 유사·중복 여부) 노인일자리 사업 등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 참여요건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요건) 수행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 요건 등 해당 사항 기재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경력 또는 자격이 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 경력이나 자격이 없어도 수행가능한 업무인지 -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 검토의견 작성 ○(근무조건) 주 근무시간(근무일수) 등 기재
○ 사업수행 능력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경력, 운영 인력 등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여부 ○ 신청한 사업이 고유업무인지 여부와 지역사회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 배제사유 (절대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되는지, 노인일자리 사업과 수요처가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한지, 경력이나 자격이 없어도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지 등 여부

② 검토사항		검토의견		
②-2. 예산 요구 적정성(40점)				
○ 인건비 적정성 (40점)	<p>○ (인원) 사업 내용,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인원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p> <p>○ (인건비) 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인건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임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p>			
②-3 성과평가 (+20점~-20점)	목표	실적 (달성률)	비고	점수
<input type="checkbox"/> '22년 집행 실적 (+5점~-5점)	000,000 천원	000,000 천원 (00.0%)	+5점(95% ↑), +3점(90% ↑) -5점(60% ↓), -3점(80% ↓)	
<input type="checkbox"/> '22년 모집 실적 (+5점~-5점)	00명	00명 (00.0%)	+5점(95% ↑), +3점(90% ↑) -5점(60% ↓), -3점(80% ↓)	
<input type="checkbox"/> '23년 모집 실적 ('23.8월말 기준) (+5점~-5점)	00명	00명 (00.0%)	+5점(95% ↑), +3점(90% ↑) -5점(60% ↓), -3점(80% ↓)	
<input type="checkbox"/> '22년 취약계층 참여율(+2점~-2점)	-	00.0%	+2점(75% ↑) -2점(65% ↓)	
<input type="checkbox"/> '22년 중도이탈률 (+2점~-2점)	-	00.0%	+2점(5% ↓) -2점(15% ↑)	
<input type="checkbox"/> '22년 반복참여율 (+1점~-1점)	-	00.0%	+1점(0.2% ↓) -1점(1.0% ↑)	
②-4. 추가 고려사항				
가점 (+5)	○ 고용위기 지역사업 (+3점)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인 경우		
	○ 참여 저조 활동 분야 (+2점)	○ 참여 비율이 저조한 활동 분야(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IT정보화, 법률법무)에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해당 분야 기재		
감점 (-2)	○ 과거 지침·법령위반 (-1점)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2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건으로 지적된 경우 * 중대한 위반사항인 경우 배제		
	○ 정산 절차 위반 (-1점)	○ 최근 3년간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위반 등 정산절차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작성		
③ 종합의견		○ 검토항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선정 여부 또는 교부 결정 금액을 결정		
검토일 : 20 년 월 일		검토자 :	(인)	확인자 : (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자치단체명		소관과 (담당자)	
사업명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학력	<input type="checkbox"/> 대학원(박사) 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석사) 졸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 졸 <input type="checkbox"/> 기타		
	전공 (_____)		
1.경력 및 자격			
1.1 경력(가장 마지막 경력과 주요경력만 기재)			
회사명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1.2 자격			
자격증명(등급포함)	취득일	취득기관	유형
			*1. 국가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3. 공인민간자격 4. 등록민간자격
2.교육훈련 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시간)	교육이수기관	
	(시간)		
	(시간)		
	(시간)		

- 본인은 “신증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며,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활동 실적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참여자 제외 요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신증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OOOO장 귀하

- * 필요시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료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인 정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생년월일, 세대주성명	보건복지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기간년월, 기간종년월

제3자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무응답 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 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 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 서식 7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체크리스트(참여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p>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p>				
확인사항(사업참여 개시일 기준)			예	아니오
1.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닙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보험설계사, 다단계,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자입니다.				
5. 참여개시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5-1. 참여개시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뒤 1년이 초과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6.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마지막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습니다.				
6-1.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이 지나기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7. '23년 불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 연계 대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해야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8. '23년에 불임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8-1. '23년에 불임의 사업에 참여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였습니다.				
9.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중장년내일센터가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참여에 동의합니다.				
<p>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근로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참여자 : (서명 또는 인)</p>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체크리스트(자치단체)

참여자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사업참여 개시일 기준)	예	아니오
1. 참여자가 '24년 기준 1959년 ~1974년 출생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참여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또는 결혼이민자로 F2, F5, F6 비자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3. 참여자가 직접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보험설계사, 다단계,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포함)에 취업한 상태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4. 참여자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휴업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참여자가 수행업무에 필요한 경력 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6. 참여자가 참여개시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지 않았는지, 2년이상 참여했다면 참여한 뒤 1년이 초과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7. 참여자가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마지막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는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90일이 지나기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8. 참여자가 '23년 불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 연계 대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해야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참여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9. 참여자가 '23년에 불임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지, 불임의 사업에 참여하였다면 참여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10. 참여자에게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중장년내일센터가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안내하였고, 참여자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확인사항(사업참여 개시일 기준)		예	아니오
11. 그 밖에 참여자가 참여자 요건, 참여자 제외요건 해당 여부를 일모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12. 참여자가 사업자등록 사실 등 참여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속이고 참여한 경우 참여중단 및 재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13. 자치단체가 위의 참여요건 및 참여 제외요건을 확인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참여시킬 경우 그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정에 따라 정산에서 불인정 처리하거나 반환명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4. 참여자가 참여 개시일 현재 참여요건에 해당하나 참여 개시일 익일 이후 참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참여자를 중단처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성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 연계 대상 사업

- ①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 ②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 ③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 ④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⑤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 ⑥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⑦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 ⑧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 ⑨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 ⑩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 ⑪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 ⑫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문화유산산업인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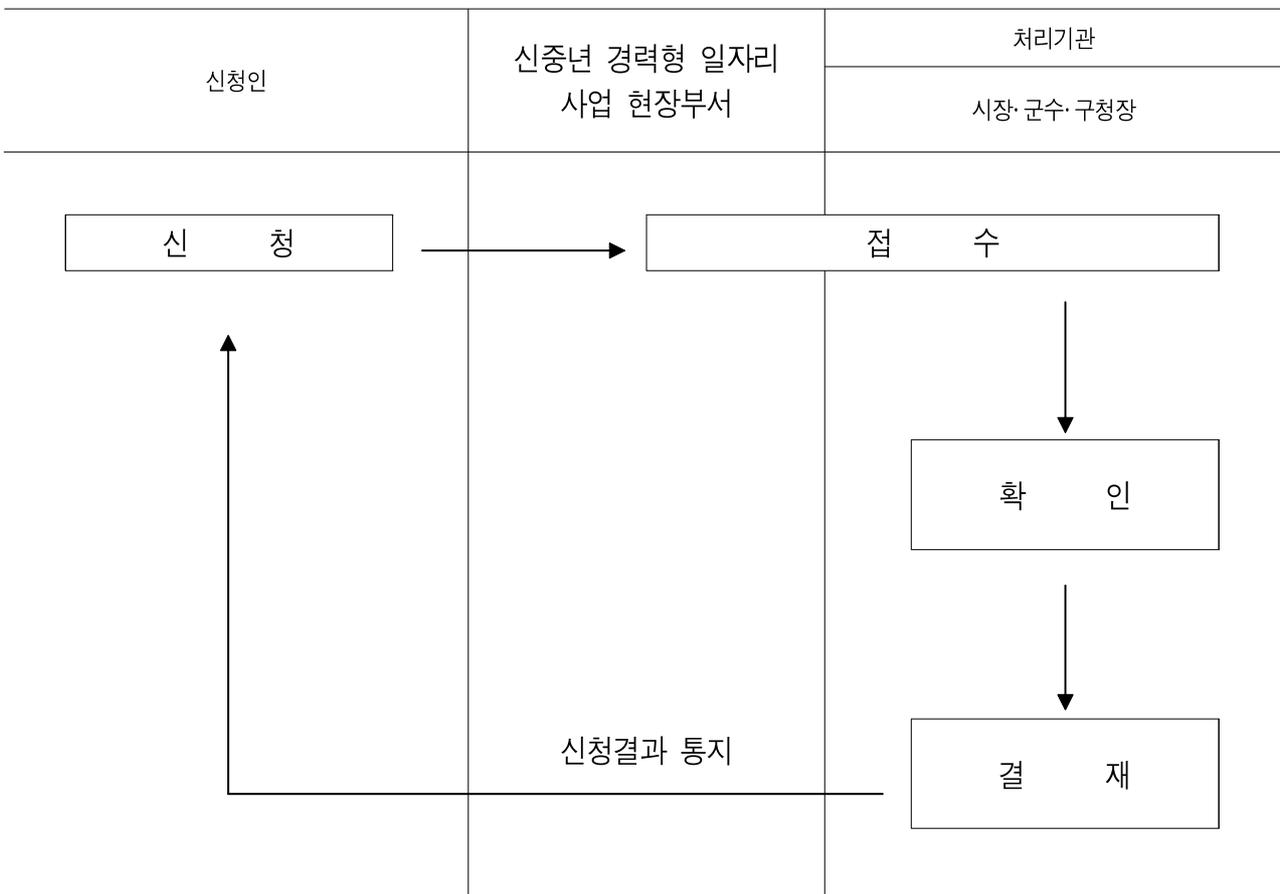
< 서식 9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전문경력 기술서			
성명		연락처	
전문경력 내용			
유사경력 내용 (자원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 사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div>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판결문 등) 나.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금융연합회 공문 등) 다.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 의 사 항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임금은 사업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서식 1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근무자 명부				
근 로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 ()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이력사항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붙임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함 사항		붙임 : 근로계약서		
퇴직·해고·사망 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사업장별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근로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서식 14>

근 무 확 인 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재 직 상 황	④ 직 종			
	⑤ 재직기간	~	(월 일)	
⑥ 용 도				
<p>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p> <p>000기관 (인)</p>				

<서식 16>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정산보고서						
자치단체명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사업명	총사업비	지방비	국고보조금(A)		잔액(A-B)	
			지출액(B)			
※ 이자 발생액(국비, 지방비 별도 표시 : 원)						
2. 집행내역						
보조금 총액	지출내역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인건비					
	관리비 및 운영비					
	기타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사업명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4. 기타 특이사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div>						

<서식 17>

신증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실적보고서

자치단체명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개요			
사업부서		사업기간	~
총사업비		보조금	
참여자수			
2 사업목적			
3 추진방법			
4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5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6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7. 개선 및 건의사항			
2.8 기타(자료 등)			
<자료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제 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실적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

활동기간(시간)

~

()

활 동 기 관

활 동 분 야

위 사람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기관 (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성실참여 확인서(직접일자리 재참여 희망자용)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최근 2년 이내 기존 직접일자리 참여 이력 여부: 예 아니오

※ "예"로 체크한 경우 (사업명)_____ (참여기간) _____ ~ _____.

위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종료일인 20 . . .까지 민간일자리에 취업하기가 곤란해 직접일자리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님
- 최근 1년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최소 I유형 9개월, II유형 6개월)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이행 및 종료하였음

* (예) 집단상담·취업특강·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지원기관이 알선한 직장에 면접 등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구직활동의무 불이행, 연락두절 등 본인의 귀책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사실이 없음

20 년 월 일

OO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인)

